# 「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 사례



# 인지세

-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등
  - 인지세 납부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인지세 납부는 기본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첨부(종이문서) 및 첩부 (전자문서)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됨.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개정('19.3.1.시행)으로 '19.3.1.부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KT-NET)'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
  -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에서 구매합니까?
  - A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나 금융기관에서 구매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doc-revenuestamp.or.kr) 에서 구매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방법에 관하여는 ☎1577-5500(금융결제원),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방법에 관하여는 ☎1522-9501(KT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해야하나?
  - A 비회원으로도 이용가능하나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함
  - 전자수입인지 구매시 구매자와 납세자가 같아야 하나요?
  - △ 구매자와 사용자(납세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음

- 신용카드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는 ?
- △ 납부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음
- 전자수입인지 구매시 금액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취소는 안되나요?
- A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금융기관 등 판매기관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일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나, 인터넷 구매인 경우에는 취소 불가능함. 소인하지 말고 은행·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환매절차를 거치셔야 함. 또한 전자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구매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시기 바람. \* 환급절차는 [인지세 환급처리 방법 매뉴얼] 참조
- Q 취소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국고금의 경우 관계 법령(한국은행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수입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때를 제외하고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도 국고금의 일종이므로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환매 또는 환급신청을 해야 함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누구나 환매 요청할 수 있나요?
- A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결제한)자만이 환매요 청할 수 있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 Q 소인처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 A 소인처리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한 표시이므로 소인처리하면 은행· 우체국에서 환매처리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확인하신 후 소인처리를 하시기 바람

#### ○ 소인처리는 무엇인가요?

A 소인은 해당 수입인지가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사용 등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인처리를 하여야 함. 따라서 과세문서 작성완료시 소인처리하여야 하고,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인처리를 함

#### Q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환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하지 않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16.10.1 이전 발급분은 구매 후 30일이내에만 환매 가능) 원본을 가지고 구입처(은행, 우체국,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환매금액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받게 됨(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 ○ 환매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나요?

A 환매기간('16.10.1 이전 발급분은 구매 후 30일 이내, 이후 발급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내)이 경과한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소명하여 환급절차를 밟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니 환매기간을 준수하여 환매요청하시기 바람. 단, 세무서에서는 인지세 납부용의 전자수입인지만 환급신청 가능함. 행정수수료용도의 전자수입인지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Q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여러장 구매시 한번에 몇매까지 가능한가요 결제 방법은?

↑ 20매까지 결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Q 전자수입인지의 용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 A 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세와 행정수수료,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의 경우 '17.7.1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됨. 따라서 당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스캔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방식은 '17.7.1. 부터 사용하실 수 없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인지세 납부를 하여야 함.
- Q 기존에는 전자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였는데, 변경계약이 발생하여 전자수입인지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중 어느것을 구매해야 하나요?
- A '17.7.1. 이후에 변경계약이 발생하여 인지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만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셔야 함
- Q '17.6.30. 이전에 구매하여 출력한 금융결제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있는데 '17.7.1. 이후 전자계약 체결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
- A '17.7.1. 부터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17.7.1. 이전에 구매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판매기관 에서 환매 받으시기 바람
- 전자수입인지의 진본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 A 진본은 전자수입인지 배경화면의 '정부수입인지' 글씨가 30개의 작은 태극무늬 배경으로 되어 있음

- Q 개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시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에 첨부 해야 합니까 ?
- A 인지세법 제7조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문서는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이므로 국가가 가지는 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함따라서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 ■ 분양권 계약 및 전자문서

- 부동산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A 아파트 등의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매수자 보관 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전매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 A 전매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당해 인지세와 가산세 300%를 부담하게 되므로 전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때에 반드시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 분양계약 체결과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 A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때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서 인지세 납부를 이행하게 됨.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 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임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에 첨부하나?

A 분양계약서인 경우 수분양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 전매 계약서인 경우 분양권 매수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 첨부함.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는 등기시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이기 때문임. 물론 이 경우 등기 시에는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 ○ 분양권 매매시 인지세는 얼마를 납부하나?

A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이므로 인지세는 15만원이고,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임. 한편, 주택의 경우 1억원 이하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는 1억원 이하이더라도 인지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만 구매할 수 있나?

A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 등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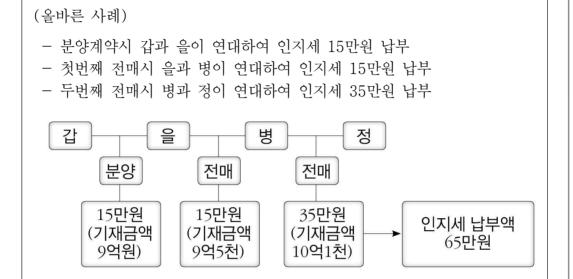
#### Q 인지세 납부는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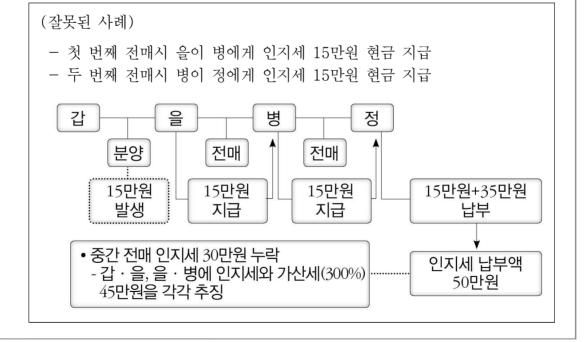
A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작성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당되는 세액에 대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면 됨

- Q 분양권 전매시 기재금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
- A 분양권 전매시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 대금 + 프리미엄)이 됨
- Q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
- A '15.1.1 이후부터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가 해당됨.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 ○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A 분양자 갑이 을과 주택분양계약을 체결(9억원)한 후 을이 해당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병(프리미엄 5천만원)에게 전매하였고, 병이 다시 정에게 전매(프리미엄 6천만원) 하고 정이 등기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경우 몇 통을 구매해야 합니까?

A 전자문서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한통의 과세문서만을 작성하므로 전자수입인지도 과세문서의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 한통을 구매하여 첩부하면 됨

#### Q 인지세 납부 후 전자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환급 절차는 ?

A 해당기관(조달청, 방위사업청, 대법원)에서 발행한 인지세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고,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원본을 제출하여 확급신청하시기 바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지를 첩부하였으나 과세문서 미작성 하였거나, 비과세 문서에 첩부 및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인지를 첩부한 경우 인지첩부가 확인되는 전자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여 환급신청하시기 바람

#### Q 홈택스 이용시 공인인증서는 누구의 것을 이용해야 합니까?

A '15.3.4부터 계약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정상처리됩니다. 따라서 로그인 사용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타인이 대신 납부할 수 없음.

- 개인인 경우 :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공인인증서법인사업자인 경우: 본점 명의 공인인증서

## ■ 기재금액 및 세액계산

- Q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가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 보수금이 함께 기재된 경우 기재금액은 ?
- A 확정된 착수금을 최저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성공 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를 보완문서로 보아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누적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 과세문서에 동일호의 과세사항을 2개 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
- A 부동산 등에 관한 이전증서 및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에 과세사항을 2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함
- 다른 호의 과세사항을 2 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의 기재금액은 ?
- A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과세문서로서 호별로 구분 기재한 경우 각각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고 이를 구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함
- Q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기재금액은 ?
- △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함

○ 기재금액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는지 ?

A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 금전소비대차 금액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음

○ 기재금액 계산시 간접세는 포함되는지 ?

A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간접세는 포함하는 것임

○ 기재금액을 외화로 표기한 경우에는 ?

A 과세문서 작성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함 (서울외국환중개(주)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Q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품권의 경우에는 ?

A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나 용역 상품권은 (구)상품권법 제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권면금액으로 봄

## ○ 기재금액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으로 병기된 경우에는 ?

↑ 해당 최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함.

- ex1)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 1천만원
- ex2) 1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1천만 1원

## 기재금액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인 경우 ?

△ 해당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

- ex1) 최저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 ex2) 최저금액 1천만원 초과 → 1천만 1원
- ex3) 최고금액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ex4) 최저금액 1천만원 미만 → 999만 9,999원

#### ○ 부동산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

↑ 매매:그 기재된 매매가액

- 교환:교환금액
  - ex1) 쌍방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많은쪽의 금액
  - ex2) 등가교환의 경우: 어느 한쪽의 금액
  - ex3)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교환차액.
  - 단, 기재사항에 의하여 교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많은쪽의 금액
- 대물변제: 소멸되는 채무의 금액. 단, 목적물 가액이 소멸하는 채무의 금액을 상회하여 채권자가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가산한 금액
- 공유물 분할·증여: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인지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

Q 월단위로 기재금액을 기재한 경우는 ?

A 월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은 해당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함

○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 기재금액 계산은 ?

A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갱신 전의 기간만을 기재금액 산출의 대상기간으로 함.

- ex) 도급계약서에 있어서 "관리비는 월 100만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새로이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 기재금액 1,200만원
- Q 주택(부속토지 포함) 매매 계약시 인접 토지를 함께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금액 계산방법은 ?

A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이외의 인접토지의 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Q 주택소유권 이전계약서와 부속토지 소유권이전계약을 하나의 계약서에 작성한 경우 기재금액 ?

A 전체 기재금액을 주택의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여부와 세액 산출함. ex) 하나의 계약서에 주택과 부속토지 기재금액 1억1천만원: 15만원 과세

- Q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체결시 주택 1억원, 토지 1억원으로 별개의 매매계약 체결시 납부할 인지세액은 ?
- A 주택과 부속 토지에 대하여 별개의 매매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여부 및 세액을 산출함. 즉, 주택 1억원, 토지 1억원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주택 부분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며, 부속토지 1억원에 대해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됨
- Q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만을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인지세는 ?
- A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시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음
-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
- A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입니다. 단, 기본계약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2만원)를 납부하고, 추가 작성하는 증서를 보완문서로 보아 그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납부 세액이 35만원에 이를 때까지 체증적으로 납부함
-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한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기재금액은 ?
- △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함

○ 인지세 과세계약과 과세제외 계약이 함께 있을 경우 기재금액은 ?

A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Q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금액은 ?

A 여러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총도급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Q 도급계약서의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경우 세액계산은 ?

A

(사례)

계약금액	기재금액	납부할 세액	기납부 세액	추가 납부할세액
당초 3천만원	3천만원	2만원	_	2만원
1차 7천만원 (4천만원 증액)	7천만원	7만원	2만원	5만원
2차 4천만원 (3천만원 감액)	7천만원	7만원	7만원	0
3차 1억2천만원 (8천만원 증액)	1억2천만원	15만원	7만원	8만원

- Q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기재금액 변경시 인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 ?
- A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 Q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대출) 약정서 1건당 기재금액을 4천만원씩 분할 작성하여 10통을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은 ?
- △ 10통의 기재금액을 합한 4억원으로 하여 인지를 첨부 또는 첩부하여야 함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의 인지세는 ?
- A 실질이 상품권에 해당한다면 권면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권에 표기된 기재내용에 의하여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해야 함
- Q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 기재금액은 ?
- A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 Q 은행이 판매기업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 약정시 대출한도를 정하지 않는 대신 구매기업과 이용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매기업에 대한 총대출한도를 정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 및 거래약정서상 대출한도 미정시 인지세액 계산방법은 ?
- A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대출약정서상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를 작성하는 때에 보완문서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함

## ■ 비과세 및 과세제외

- 비과세 문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
- A 국가나 지자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하는 증서,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등이 있음
- 비과세로 보는 주택의 범위는 ?
- A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이고,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봄
  - 주택부분 면적≥사업용건물 면적 : 전부 주택
  - 주택부분 면적< 사업용건물 면적: 전부 사업용 건물

-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작성하는 문서도 비과세에 해당하나?
- A 인지세법상 비과세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므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 단,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개별법률(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국가로 보도록 한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함
- 조특법상 인지세 비과세 되는 항목은 ?
- A 조특법 제116조1항에 나열된 항목으로 어린이예금통장(초·중·고등학생), 신협 등 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적금 증서와 통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 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가 창업일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등이 해당됨
- Q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인 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나 ?
- A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 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Q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대상인가 ?
- A 2020.1.1부터 과세 권면금액 3만원초과시 과세대상임. 「인지세법 제3조제 1항제8호」

○ 과세제외 되는 모바일 상품권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 모바일상품권이란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말함

○ 무기명식 상품권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

A 기명식상품권·선불카드는 과세되지 않으며, 기명식이란 회원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카드실물에 회원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거나, 카드사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는 카드를 의미하고 발급 이후 양도가 불가능함

Q 동산양도에 관한 문서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세액은 ?

△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Q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이 과세대상인가 ?

A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의 입장권 및 이용권은 과세제외임

Q 2통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중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사본도 과세대상인가 ?

A 사본에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과세제외임

- Q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참석자들에게 교부하는 기념품 인환권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나 ?
- A 창립기념일 등 각종 경축행사를 하는 경우 그 기념식장 또는 체육대회장 등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기념품 인환권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Q 신장개업으로 고객들에게 요금할인권을 발행하였는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
- A 신장개업·창립기념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없이 발행하는 요금 할인권(ex: 사진촬영할인권·양복주문할인권 등)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 A 전자문서를 자체업무에 참고하고자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Q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기업체 또는 국고금의 대여사업을 행하는 단체가 작성하는 문서도 비과세인가 ?
- A 국고은행(한국은행 본·지점)이나 국고대리점(일반은행)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만이 비과세대상임
- Q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을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계약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
- A 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됨

# ■ 환급 및 기타

○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

A 상품권은 상품권이 유가증권으로 유효하게 작성되는때 즉 인쇄되는 때이고, 선불카드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작성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봄

○ 상품권의 인쇄상 하자로 인하여 폐기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되는가 ?

A 인지세를 납부하고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이후 동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상품권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등이 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 계약이 파기된 문서는 환급 가능한가?

A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문서 작성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님

○ 인지세 환급청구 기한은 언제인가 ?

A 인지세를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임

○ 인지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A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 A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원본과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인지세 과오납 (미사용)확인서 등 과오납(미사용)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됨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였으나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비과세 문서에 첩부 및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문서 원본을 제출하여 환급신청하시면 됨
- Q 인지세 과세문서에 첨부하기 위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시용도 구분을 행정수수료용으로 한 후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한가 ?
- A 용도구분과 상관없이 실제내용이 인지세 납부용이라면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 하시면 됨
- Q 신용카드입회신청서를 작성한 기존회원이 추가로 체크(직불)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
- A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별개의 지급수단이므로 신청 서도 별도의 문서로 보아야 함. 따라서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 신청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수 없음.
  - \* 대법원판례 2016다254924('17.2.3)

단, '18.1.1 이후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과세제외

- Q 실질이 도급계약인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인가 ?
- A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대한 과세이므로 반드시 문서의 작성이 있어야 함. 문서의 작성이라 함은 단순히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날인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두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Q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 받은 자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

A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인지세 후납승인을 받은자가 무납부시 1일 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선납의 경우 300%의 가산세가 해당됨

#### 【붙임1】 (매뉴얼) 인지세 환급처리 방법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였으나 미사용 (과오납 등 확인되는 경우)	'16.10.1이전 구매시		'16.10.1이후 구매시		
	소인시	미소인시	소인시	미소인시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	은행 • 우체국	
	구비서류 : 과세문서 원본,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전자수입인지 원본		과세문서원본,	전자수입인지	
	* 환매가능기간이 30일 이었으므로 판매기관에 신청불가		전자수입인지 원본	원본	
			* 원본은 수령하여		
			재사용을 못하게 함		

- \* 단,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시 <u>입력한 용도구분</u>과 상관없이 <u>실제 용도를 확인하여</u> 과세문서에 대한 <u>인지세 납부용인 경우에만</u> 관할 세무서에서 <u>환급처리함</u>. 따라서, 행정수수료용으로 사용하고자 한 경우는 수수료 해당기관에 환급신청 하도록 안내
- \* 우표형 수입인지는 구매장소 상관없이 판매기관(우체국, 은행) 에서 교환·환매 가능(수입 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단, 우표형 수입인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판매기관에서도 해 주지 않음. 그렇다 해도 세무서는 수입인지 소관이 아니고 인지세 소관이므로 해줄 수 없음.

전자문서 납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첩부 즉시 소인이 되므로 미소인이 없음. 따라서 과다납부 등으로 환급 신청시 전자문서 출력본을 확인하여 과다 납부 여부 확인 후 처리하되 환급 결의서 전자서고에 해당 서류 수록			

#### □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8조의 3【세액의 환급 및 공제】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 3【환급절차】 인지세법 기본통칙 8-11…3【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환급·공제 대상】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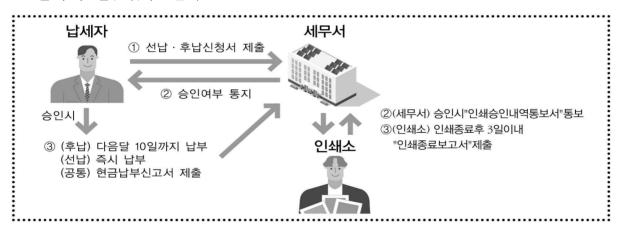
#### 【붙임2】 (매뉴얼)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 절차

관련근거: ①인지세법 제8조제1항및제2항 ②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③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21조 ④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20-1호)

#### 1. 법령 내용

- □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및 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지세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 및 첩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으며(선납)
- □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후납)

#### 2. 인지세 현금납부 절차



- ①「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과세문서 작성 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
- ②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현금납부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납세자에게 승인서 교부 (시행규칙 별지 제1, 2호 서식)
  -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발송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③ (납세자) 인지세 납부 후「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작성·제출(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인쇄소) 과세문서 인쇄종료 후 3일이내「인쇄종료보고서」제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

# 【붙임3】 인지세 기재금액 계산

관련근거 : ① 인지세법 제4조 ②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통칙 4-8-1~9

구 분	내 용	기재금액으로 보는 금액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기재사항을 통하여 계산한 금액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기재금액 변경시	증액하는 경우	증액한 계약금액 합산한 기재금액의 세액 - 당초 납부한 세액
	감액하는 경우	변경 없는 것으로 봄
한도금액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	한도금액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한도금액
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	해당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
	기재금액이 최저금액 또는 최고 금액인 경우	해당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u>으</u> 로 병기된 경우	해당 최저금액
	추정단가 또는 수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월단위로 계약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	해당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금액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의 기재가 없는 것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계약기간 자동 연장시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	갱신 전의 기간만을 기재금액 산출 대상 기간 으로 함
하나의 문서가 여러 가지 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3①1-3호,5,6호의규정에의한 문서가 두개이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호별로 구분표기 및 구분계산 가능하면 호별로 각각 해당되는 세액 납부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
	하나의 문서에 법§3①1-3호, 5호, 6호와 4,8,9,10,12호가 함께 기재	1-3호, 5호, 6호 문서로 봄
	하나의 문서에 법§3①1-3호까지, 5호 또는 6호와 7호, 11호가 함께 기재	7호 또는 11호로 봄
	하나의 문서가 4호, 7호, 12호의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이 큰 규정의 문서로 봄

# 참고 도급·위임이 혼재된 계약에 대한 구분(참고자료)

- □ 도급・위임의 정의
  - (공통점) 민법상 계약(15종)\*의 일종이며 노무공급계약
    -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 (도급) 일을 완성할 것과 보수지급을 약정하여 효력 발생(민법 제664조)하며 일의 완성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
  -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이를 승낙하여 효력 발생(민법 제680조)하며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성립
  - 과세대상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도급 문서(4종)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국가(지자체)와의 계약

#### 위임문서(14종) 수임계약서

변호사, 해양사고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기술자

#### □ 도급·위임의 구분

- (과세대상 도급문서) 건설도급계약서 등 전형적인 도급문서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 해제권 제한 및 수급인의 독립성 보장 등 도급계약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문서에 한함
- (과세제외 위임문서) 사무처리를 위탁할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도급계약의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 위탁자의 광범위한 지도·감독권, 복임권의 제한 및 계약해지권 등 위임계약의 요소가 포함된 문서는 과세제외

#### □ 도급·위임의 구분 기준

구 분	도 급 계 약	위임계약
의 의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보수지급 약정	사무처리 위탁과 상대방의 승낙
수급·수임인의 의무(책임)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 -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임 사무처리상황 보고의무
해제권의 제한	완성된 건물 등에 대한 계약해지 제한	자유로운 계약해지
노무제공 방법	일의 완성을 위해 수급인의 독립성이 전적으로 인정	위탁자의 광범위한 지도·감독 - 당사자간 특별한 신뢰관계
복임권의 제한		위임인의 승낙없이 제3자 위임사무 처리 지시 불가